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1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송기헌·강득구·강훈식

권칠승 · 김종민 · 김태년

문진석・박 정・조승래

주철현ㆍ허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,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.

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, 교육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 희망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시·군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양수 수요가 적어 상속인이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양도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,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뒤늦게 상속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

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 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 호하고,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 는 것임(안 제15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 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	제15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
속)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	속) ①
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	
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	
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	
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	
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<u>다만,</u>
<u><단서 신설></u>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
	<u>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</u>
	<u>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당</u>
	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
	는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
	<u>서 연장할 수 있다.</u>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